

필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입시장은 제30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
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4

1998. 10.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19일)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제1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21일)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신동우)

가. 제안이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확대 및 세분화하여 동 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변경 및 세분화(안 제3조)

○현행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과 위탁운영 기간
만료('98.12.31) 및 동 공단에서의
위탁운영 취소 요구

○개정

- 지방공사·지방공단
-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 국내외 에너지 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
- 기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직명 변경 :

통상산업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안 제12조)

다.참고사항

1)관계법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공급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①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④(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급대상지역에 지역난방사업 또는 지역냉방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나.전기사업법 제2조의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p>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난방사업 또는 지역냉방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p>	<p>2.(생략)</p> <p>②(생략)</p> <p>○지방자치법</p> <p>-제95조(사무의 위임) ①-②(생략)</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및 시설현황		
구 분	강 서 지 구 (목동열병합발전소)	노 원 지 구 (노원열병합발전소)
위 치	서울 양천구 목6동 9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772
공급지역	3개구 7개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3개구 8개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공급가구	계획 88,936가구 공급 79,682가구	계획 105,688가구 공급 76,672가구
시설규모	열병합보일러 100톤 1기 열전용보일러 800톤(10기) 터어빈발전기 20,000kW 열수송관 109.5kW	열병합보일러 150톤 1기 열전용보일러 600톤(4기) 터어빈발전기 37,000kW 열수송관 110.3kW
<p>3)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p>○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기간이 '98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변경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p> <p>○에너지관리공단의 동 업무 위탁 경위는</p> <p>- '83.5. 목동·신정동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공동주택난방을 집단에너지공급체계인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방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건설, 운용하도록 결정되어 '83.12.2. 수탁기관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는 목동·신정동</p>		<p>지구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업무 위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p> <p>- 이에 의거 '83.12.20.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90.11.8. 당초 업무위탁협약 내용중 사업대상지역을 목동·신정동지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을 다시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p> <p>- 예산운용체계는 당초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로('90.12.29) 다시 강서지구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노원지구는 일반회계로('93.9.25) 변경되고 '95.12.30부터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p>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유는

- '93.12 상공자원부로부터 산하기관 민영화 및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운영 업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 '94.3 노원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96.12월 준공시까지 현재계로 유지토록 1차 연기하고
- '96.11 노원지구의 열공급이 정상화되는 '98년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현재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차 연기를 요청하여 통산산업부에서 수용하였으나
- '98.4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작업 차원에서 감사원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운영의 불합리성 지적 및 서울시의 자체 운영시행 요구가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에서 운영주체 이관에 따른 사전 조치 요구가 있어
- '98.5.21. 서울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합리적인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99. 6월말까지 위탁기간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 '98.5.2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기간 재연장 불가로 회신되고 산업자원부에서도 '98.6.9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와 같은 지역난방사업의 위탁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위탁관리체계를 조기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감사원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 연장은 불가하니 '98년말까지 운영주체 이관이 진행되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통보되어
- '98.6.23 서울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98년말까지 인수의사를 전달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 '98.6.29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구조조정 부분은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역난방사업에 관하여는 서울시로의 이관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동 공단에서 자체 구조조정은 불필요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98.7.15 산업자원부에서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 '98. 8월말까지

이관 완료 요청이 있었으며

- 서울시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98.5.1부터 7.24까지 3차에 걸쳐 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현단계에서는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결정 (민간위탁이 어려울 경우는 시산하공사에 우선 위탁)함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 '98. 9. 4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민간위탁 추진일정(업무인계인수 - '98.11.31)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금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 현안은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의 운영인력 인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 서울시에서는 '86.9.24 동력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장래 업무인계인수시는 당연히 운영요원 인력까지 인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목동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및 인력보장 통보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 이와 관련 인력인수 보장에 대한 법률적 효력 및 범위(협약서에는 미규정), 인력인수후 민간 위탁시 재고용 방법 및 고용승계 보장의무, 퇴직금 정산, 고용미승계 인력의 신분보장 등의 사항을 해결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재 상기 본부의 조직은 3차 2사업단 (단내 4차)19부이며 정원 231명에 현원은 '98.9.15 현재 235명입니다.
- 이상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위탁경위 및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유와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현안 문제를 살펴본 결과
- 동 개정조례안은 '98년말까지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야 하는 추진일정과 미위탁시 발생되는 15,300여 가구에 대한 열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의안이며
 - 조례안 제3조(업무의 위탁)의 위탁할 수

있는 자(수탁대상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98.9.21 입법예고하고, 기관, 법인,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상기 관계법령에 근거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입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제12조(공급규정의 준수 의무 등)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고용승계, 신분보장, 퇴직금 정상등 세반사항은 신중한 처리로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위탁 실행을 위한 수탁자 선정, 운영방안, 조직과 인력 등은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와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동 사업의 예산 회계인 집단에 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역난방공급설비, 배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정액을 산출 매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참고사항

○적립대상액('98년말) - 총누계액 9,681백만원

○적립현황

· '83~'90 : 총5,956백만원을 지출 에너지관리공단 명의로 적립하였으나, '91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시 서울시에서 미관리한 것이 지적되어 이를 환수 접수 처리

· '91~'97 : 적자운영으로 미적립(예산 미편성)

· '98 : 6,040백만원(추경포함)예산편성 적립 예정 - 적립대상액의 62.3%

4.질의·답변 : 생략

5.심사결과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

6.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5

1998. 10.
기획경제위원회

1.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19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제1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21일) 질의·답변 토론, 의결

2.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신동우)

가.제안이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98.8.1)한다는 통보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심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참고사항

1)관계법규 : 도시가스법 제20조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②(생략)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